

우편물 처리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우편물 수취인 주소 표기 의무사항 및 권장사항’을 설정하고, 다량우편물 발송업체 등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우편요금 감액요건 변경(안)’을 다음과 같이 사전공고 합니다.

본 공고는 우편물 발송업체 등에서 사전 준비토록 홍보하는 사항이며, 대국민 고시(2012. 10월 예정) 이후 시행될 예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10월 26일

우정사업본부장

우편물 수취인 주소 표기(안) 공고

1. 공 고 일 : 2011년 10월 26일
2. 적용대상 : 우편요금 감액대상 우편물 발송업체
3. 추진일정
 - 공고기간 : 2011. 10. ~ 2012. 12월
 - 대국민 고시 : 2012. 10월 중 (고시내용 : 우편요금 감액 일반요건 변경 등)
4. 공고내용
 - (별표 1) 우편물 수취인 주소 표기 의무사항(안)
 - (별표 2) 우편물 수취인 주소 표기 권장사항(안)
 - (별표 3) 우편요금 감액대상 기준 변경(안)

[별표 1]

우편물 수취인 주소 표기 의무사항(안)

※ (유의사항) 변경안은 공식 고시(2012. 10월 예정) 되기 전 까지 변경될 수 있으며, 공고기간 동안 특별한 의견이 있을 경우 항목조정 등 변경이 가능함

항목			규격(필수 요구사항)
주소 표기	1. 글꼴 및 속성	1-1. 글씨체	바탕체, 명조체, 고딕체, 굴림체, 돋움체, 중고딕, 견고딕, 맑은고딕, Arial 등 ※ 이외 새로운 서체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우정사업본부에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3개월)을 두고 사전 승인을 거쳐 사용
		1-2. 글씨크기	9 ~ 14 Point
		1-3. 글씨모양	- 볼드체, 이탤릭체(기울임체), 주소 밑줄, 윗줄 사용금지 - 주소 정보 표현 특수 문자(@, /, -(하이픈), (,), [,], &, ,(섬표)) 이외의 특수문자 사용금지
		1-4. 인쇄품질 (최소)	200 dpi 이상
	2. 글자간격	2-1. 최소	0.35mm 이상
	3. 단어 간 공백	3-1. 최소	단어와 단어 사이는 일정간격 (예 : 키보드 자판의 스페이스 1칸 이상)을 유지해야 함
	4. 문단간격	4-1. 최소	1.5mm 이상
규격	5. 주소와 바코드 간격	5-1. 상하(최소)	2mm 이상
		5-2. 좌우(최소)	7mm 이상
	6. 주소와 홍보문구 사이의 공백 확보(도안 포함)	6-1. 상하(최소)	10mm 이상
		6-2. 좌우(최소)	10mm 이상
	7. 행정구역 명칭	7-1 명칭 표기 방법	“시”, “군”, “동”, “읍”, “면”, “리”, “가”, “길”, “로”, “대로” 등은 생략 금지(지번, 도로명 주소 공통사항) ※ 예시)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 수원 권선 권선 (×) 수원시 권선구 권선대로 (○), 수원 권선 권선 (×)

[별 표 2]

우편물 수취인 주소 표기 권장사항(안)

※ (유의사항) 변경안은 공식 고시(2012. 10월 예정) 되기 전 까지 변경될 수 있으며, 공고기간 동안 특별한 의견이 있을 경우 항목조정 등 변경이 가능함

항목			규격(권장 요구사항)
주소 표기 규격	1. 주소영역	영역	높이 : 2/3, 폭(넓이) : 3/4 (봉투 정면 오른쪽 아래 기준)
		여백(최소)	주소 영역의 상, 하, 좌, 우 : 5mm
	2. 도로명주소	1행	행정구역(시·도, 시·군·구, 읍·면) + 도로명 + 건물번호
		2행	상세주소(동, 층, 호) + 참고항목(법정동, 공동주택 명칭 등) 또는 사서함
		3행	법인명(기관 또는 상호)
		4행	성명(직위, 호칭)
		5행	우편번호
		정렬	(1 ~ 4행) 왼쪽정렬, (5행) 오른쪽 정렬
	3. 지번주소	1행	행정구역(시·도, 시·군·구, 읍·면·동·리·가) + 지번(본번, 부번) ※ 지번표기 생략 금지 다만, 건물 명칭이 최소단위 행정 구역(읍, 면, 동, 리, 가)에 단독인 경우 생략가능 ※ 지번의 본번과 부번 사이에는 하이픈(-) 또는 “번지”, “의”를 사용하여 본번과 부번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2행	건물명(아파트, 빌딩 등) + 동, 층, 호수(단지, 동명) 또는 사서함
		3행	법인명(기관 또는 상호명)
		4행	성명(직위, 호칭)
		5행	우편번호
		정렬	(1 ~ 4행) 왼쪽정렬, (5행) 오른쪽 정렬
	4. 행정동, 법정동	표기방법	1개 동만 표기 (단, 병행표기가 필요한 경우 1개 명칭을 괄호()로 표기하고 도로명 주소, 지번주소 표기방법 중 2행의 제일 끝에 표기)
	5. 통/반	표기방법	표기생략

[별 표 3]

우편요금 감액요건 변경(안)

※ (유의사항) 변경안은 공식 고시(2012. 10월 예정) 되기 전 까지 공고기간 특별한 의견이 있을 경우 변경될 수 있음

I. 다량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 (고시 제2011-44호, 2011.9.30)변경(안)

- 1. 우편요금 감액대상 : 변경사항 없음
- 2. 우편요금 감액요건

변경 전	변경 후
가. 우편물을 제출할 우체국 나. 1회 발송 최소 우편물 수 다. 물량 및 구분 감액을 적용을 위한 일반적 요건 1) 우편번호 구분 2) 우편물 제출형태 가) 묶음제출(규격외 우편물) 나) 접수용상자 접수(규격우편물) 다) 우편자루 제출 라) 종이상자(BOX) 제출 마) 파렛(우정사업본부장 지정 파렛) 제출 바) 접수목표표 제출 사) 수취인주소, 우편번호, 요금인영 등 (중략), 수취인의 주소는 한글로 표기하여야 한다. 아) (신설)	가. 작동 나. 작동 다. 작동 1) 작동 2) 작동 가) 작동 나) 작동 다) 작동 라) 작동 마) 작동 바) 작동 사) 작동 아) 규격 우편물 ¹⁾ 은 별표1에서 정한 우편물 수취인 주소표기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규격 우편물이라 함은 우정사업본부에서 고시 [제2011-24호, 통상우편물의 규격요건 및 외부 표시(기재) 사항 등에 관한 고시] 한 '봉투에 넣어 봉합하여 발송하는 우편물의 규격요건' 을 준수한 우편물
라. 구분 감액을 적용을 위한 제출요건	라. 작동

- 3. 우편요금 감액범위(감액률) : 변경사항 없음

Ⅱ. 서적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등에 관한 고시
(고시 제2011-45호, 2011.9.30) 변경(안)

1. 우편요금 감액대상 : 변경사항 없음
2. 우편요금 감액요건

변경 전	변경 후
가. 우편물을 제출할 우체국 나. 1회 발송 최소 우편물 수 다. 기본 및 구분 감액을 적용을 위한 일반적 요건 1) 우편물에는 (중략) 제본할 수 있다. 2) 본지, 부록, 호외 등을 (중략) 아니된다. 3) 관보는 (중략) 접수할 수 있다. 4) 우편물을 봉합하여 (중략) 하여야 한다. 5) 우편번호 구분 6) 우편물 제출형태 7) (신설)	가. 작동 나. 작동 다. 작동 1) 작동 2) 작동 3) 작동 4) 작동 5) 작동 6) 작동 7) 규격 우편물 ¹⁾ 은 별표1에서 정한 우편물 수취인 주소표기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규격 우편물이라 함은 우정사업본부에서 고시[제2011-24호, 통상우편물의 규격요건 및 외부 표시(기재) 사항 등에 관한 고시]한 '봉투에 넣어 봉합하여 발송하는 우편물의 규격요건'을 준수한 우편물
라. 구분 감액을 적용을 위한 제출요건	라. 작동

3. 우편요금 감액범위(감액률) : 변경사항 없음

Ⅲ. 정기간행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등에 관한 고시
(고시 제2011-46호, 2011.9.30) 변경(안)

1. 우편요금 감액대상 : 변경사항 없음
2. 우편요금 감액요건

변경 전	변경 후
가. 우편물 정기발송 계약의 체결 나. 우편물을 제출할 우체국 다. 1회 발송 최소 우편물 수 라. 기본 및 구분 감액을 적용을 위한 일반적 요건 1) 우편물에는 (중략) 제본할 수 있다. 2) 본지, 부록, 호외 등을 (중략) 아니된다. 3) 관보는 (중략) 접수할 수 있다. 4) 우편물을 봉합하여 (중략) 하여야 한다. 5) 우편번호 구분 6) 우편물 제출형태 7) (신설)	가. 작동 나. 작동 다. 작동 라. 작동 1) 작동 2) 작동 3) 작동 4) 작동 5) 작동 6) 작동 7) 규격 우편물 ¹⁾ 은 별표1에서 정한 우편물 수취인 주소표기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규격 우편물이라 함은 우정사업본부에서 고시[제2011-24호, 통상우편물의 규격요건 및 외부 표시(기재) 사항 등에 관한 고시]한 '봉투에 넣어 봉합하여 발송하는 우편물의 규격요건'을 준수한 우편물
마. 구분 감액을 적용을 위한 제출요건	마. 작동

3. 우편요금 감액범위(감액률) : 변경사항 없음

IV. 홍보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
(고시 제2011-47, 2011.9.30) 변경(안)

1. 우편요금 감액대상 홍보우편물 : 변경사항 없음
2. 우편요금 감액요건

변경 전	변경 후
가. 우편물을 제출할 우체국 나. 1회 발송 최소 우편물 수 다. 물량 및 구분 감액을 적용을 위한 일반적 요건 1) 우편번호 구분 2) 우편물 제출형태 가) 묶음제출(규격외 우편물) 나) 접수용상자 접수(규격우편물) 다) 우편자루 제출 라) 종이상자(BOX) 제출 마) 파렛(우정사업본부장 지정 파렛) 제출 바) 접수목록표 제출 사) 수취인주소, 우편번호, 요금인영 등 (중략), 수취인의 주소는 한글로 표기하여야 한다. 아) (신설)	가. 작동 나. 작동 다. 작동 1) 작동 2) 작동 가) 작동 나) 작동 다) 작동 라) 작동 마) 작동 바) 작동 사) 작동 아) 규격 우편물 ¹⁾ 은 별표1에서 정한 우편물 수취인 주소 표기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규격 우편물이라 함은 우정사업본부에서 고시[제2011-24호, 통상우편물의 규격요건 및 외부 표시(기재) 사항 등에 관한 고시]한 '봉투에 넣어 봉합하여 발송하는 우편물의 규격요건'을 준수한 우편물
라. 구분 감액을 적용을 위한 제출요건	라. 작동

3. 우편요금 감액범위(감액률) : 변경사항 없음

V. 상품안내서(카탈로그) 우편물 적용요건 및 감액을
(고시 제2011-18, 2011.5.30) 변경(안)

1. 상품안내서(카탈로그) 우편물 : 변경사항 없음
2. 우편요금 적용요건

변경 전	변경 후
가. 우편물 발송 계약 체결 나. 우편물을 접수할 우체국 다. 발송 우편물수 라. 우편번호 구분 마. 우편물 제출형태 1) 묶음 제출 2) 묶음 처리된 우편물의 파렛(우정사업본부장 지정 파렛) 제출 3) 올바른 우편번호 사용 및 바코드 인쇄 4) (신설)	가. 작동 나. 작동 다. 작동 라. 작동 마. 작동 1) 작동 2) 작동 3) 작동 4) 규격 우편물 ¹⁾ 은 별표 1에서 정한 우편물 수취인 주소 표기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규격 우편물이라 함은 우정사업본부에서 고시[제2011-24호, 통상우편물의 규격요건 및 외부 표시(기재) 사항 등에 관한 고시]한 '봉투에 넣어 봉합하여 발송하는 우편물의 규격요건'을 준수한 우편물

3. 상품안내서(카탈로그) 우편물 계약 요금 : 변경사항 없음

VI. 전자우편(e-그린우편)의 인쇄·봉합 등 취급조건 및 감액조건 등에 관한
고시(고시 제2011-20, 2011.6.13.) 변경(안)

I. 전자우편(e-그린우편) 취급조건 : 변경사항 없음

II. 전자우편(e-그린우편) 감액조건

변경 전	변경 후
1. 감액조건 가) 발송인(계약자)이 동일하고, 1회 1만통 이상 발송하는 우편물로 우편물의 종류, 중량 및 규격이 동일한 일반 우편물 나) (신설)	1. 감액조건 가) 작동 나) 규격 우편물¹⁾은 별표1에서 정한 우편물 수취인 주소 표기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규격 우편물이라 함은 우정사업본부에서 고시[제2011-24호, 통상우편물의 규격요건 및 외부 표시(기재) 사항 등에 관한 고시]한 ‘봉투에 넣어 봉합하여 발송하는 우편물의 규격요건’을 준수한 우편물
2. 감액률	2. 작동

VII. 국회의원의회정활동보고서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등에 관
한 고시(고시 제2010-34, 2010.9.1) 변경(안)

1. 우편요금 감액대상 : 변경사항 없음

2. 우편요금 감액요건

변경 전	변경 후
가. 우편물을 제출할 우체국 나. 우편물 제출 방법 1) 우편번호(중략) 제출하여야 한다. 2) 1묶음은 (중략) 초과할 수 없다. 3) 각 묶음에는(중략)표지를 끼워야 한다. 4) 우편물을(중략) 제출하여야 한다. 5) 신설	가. 작동 나. 작동 1) 작동 2) 작동 3) 작동 4) 작동 5) 규격 우편물¹⁾은 별표1에서 정한 우편물 수취인 주소 표기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규격 우편물이라 함은 우정사업본부에서 고시[제2011-24호, 통상우편물의 규격요건 및 외부 표시(기재) 사항 등에 관한 고시]한 ‘봉투에 넣어 봉합하여 발송하는 우편물의 규격요건’을 준수한 우편물

3. 우편요금 감액범위(감액율) : 변경사항 없음

Ⅷ. 비영리민간단체 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고시 제2009-47, 2009.11.20) 변경(안)

1. 우편요금 감액대상 : 변경사항 없음
2. 우편요금 감액요건

변경 전	변경 후
가. 우편물을 제출할 우체국 나. 우편물의 제출 방법 1) 우편물(중략) 제출하여야 한다. 2) 우편물 제출시(중략) 증명하여야 한다. 3) 우편물 제출시(중략)발송하여야 한다. 4) 우편물(중략) 초과할 수 없다. 5) 신설	가. 작동 나. 작동 1) 작동 2) 작동 3) 작동 4) 작동 5) 규격 우편물 ¹⁾ 은 별표1에서 정한 우편물 수취인 주소 표기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규격 우편물이라 함은 우정사업본부에서 고시[제2011-24호, 통상우편물의 규격요건 및 외부 표시(기재) 사항 등에 관한 고시]한 '봉투에 넣어 봉합하여 발송하는 우편물의 규격요건'을 준수한 우편물

3. 우편요금 감액범위(감액율) : 변경사항 없음